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703호

발의년월일 : 2021년 12월 7일
발 의 자 : 정순희 의원
찬 성 자 : 임준희, 공기환, 이재식, 조진호, 윤인숙 의원 (5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이 가지게 되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의회에서 복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류 신설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직류신설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를 신설함.(안 제2조, 별표 1)

다.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함.(안 제3조,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6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 타

1) 조 례 안 : 별첨

2) 조례안 예고 : 2021. 12. 8. ~ 2021. 12.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험과목)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1월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2조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행정	의회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서기보

[별표 2]

신설하는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표(제3조 관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행정
			직류	의회
6급 및 7급	공개경쟁 임용	제1차	필수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지방자치론, 행정학, 행정법
			선택	지역개발론, 헌법 중 1과목
	경력경쟁임용·전직·승진	제1차	필수	지방자치론
		제2차	필수	행정학
			선택	행정법,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신설하는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표(제4조 관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행정
			직류	의회
8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지방자치론, 행정학개론
	경력경쟁임용·전직·승진	제1차	필수	지방자치론
		제2차	필수	행정학개론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8.〉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0.〉

③ 삭제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2. 6.〕

제46조(시험과목) ⑫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하는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1. 공개경쟁임용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을 정할 것

가. 제1차 시험은 신설되는 직류가 속하는 직렬의 같은 직급의 제1차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으로 할 것

나. 제2차 시험은 신설되는 직류가 속하는 직렬의 같은 직급의 제2차 시험과목 수와 같게 할 것

2. 경력경쟁임용시험: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으로 정할 것